

저작권법 내용중 추가로 개정할 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6월 4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취지

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 형태 도서등의 복제·전송을 거의 모든 도서관에 허용하고 있어 국내·외에서 국제조약 위반이 거론될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반면,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등을 통해 소장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 초래 및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현행 저작권법 시행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도서관등이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만을 허용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복제도 허용함.(안 제28조제1항)
- 나.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28조제1항1호 단서 신설)
- 다. 종전에는 도서등의 도서관간 복제·전송을 무제한 허용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서등의 당해 도서관등의 관내 열람을 목적으로 한 복제·전송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함.(안 제28조제2항)
- 라. 관내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내에서의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도서관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토록 함.(안 제28조제2항 단서 신설)
- 마.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전송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 제3항 신설)

3. 주요 내용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저작권과장, 3704-9440~3)에게 2001. 6. 1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이 법의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종합의견

- 가.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며, 도서관등에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반 조치와 이를 도서관등에서의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함.
- 나. 그러나 도서관등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방안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저작물들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그것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 도서관등이 이러한 국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돕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는 오히려 저작물의 이용을 둔화시켜 결국 저작권자들의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음. 따라서 저작권법 개정의 기본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도서관등에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동안 아날로그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등에 대한 면책의 범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 다. 특히 지금의 저작권 환경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이용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저작물 이용에 있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다양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등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기관을 통한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지식기반 활성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저작권자들의 권익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라. 기존의 저작권법에 따라 현재 많은 도서관들이 21세기 정보화시대의 환경과 기술을 활용한 전자도서관 등의 구축을 완성하였거나 구축 중에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조건들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경우 이러한 도서관들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며 이는 상당한 혼란과 재정적 낭비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 기반이 부실한 나라에서는 지식기반의 안정적 창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

경제 발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도서관등에서 이미 구축한 또는 구축 중인 전자도서관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마. 또한 도서관등에서의 저작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거나 도서관간 디지털 형태로서의 상호 대차 등의 업무에 있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필수불가결할 것임. 또한 개정안 제28조 제2항 단서 신설이 될 경우 도서관등에서 도서등의 소장능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공공의 도서관등에 대한 추가적 재정지원을 대폭 늘이는 대책이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바. 우리 협회는 이러한 기본입장에 의거하여 금번 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는 물론 저작권자의 권익 확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지식 기반 창출을 위해서는 도서관등에서의 보다 개방적인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고려와 조치가 법 개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개별항목에 대한 의견

가항. 찬성.

나항. 조건부 찬성.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저작물과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의 이용형태가 한 도서관에서 다르게 적용될 경우, 특히 보다 발전적 형태의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의 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도서관등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큼. 따라서 기술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는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도 조사·연구 목적인 경우에는 일부분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임.

다항. 조건부 찬성.

도서등의 도서관간 복제·전송은 도서관의 필수적인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의 법 개정은 동의할 수 없음. 이 또한 별도의 충분한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도서관간 복제·전송이 허용되어야 함.

라항. 의견없음.

마항. 의견없음.

의견 제출자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두영)

주 소 :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전 화 : 02-535-4868